

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인적사항

① 법인(단체)명	(사)사랑터	② 사업자등록번호	101-82-14424
③ 대표자 성명	이충호	④ 기부금단체 지정일	2014.09.30
⑤ 소재지	종로구동송4가길16 대보스위트빌 A동 102호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www.sarangter.co.kr

2. 의무이행 여부

⑦ 의무	⑧ 의무이행 여부	⑨ 점검결과
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	적정	적정
나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적정	적정
다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	적정	적정
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적정	적정
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(2012. 2. 2.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)	적정	적정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18년 8월 16일

제출인 : (사) 사랑터

(단체의 직인) [인]

귀하



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18년 8월 20일

(통보기관의 장)

서울특별시장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의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인적사항

① 법인(단체)명	사단법인 굿하트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108-82-08995
③ 대표자 성명	김 성 국	④ 기부금단체 지정일	2014년 6월 30일
⑤ 소재지	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양녕로 28길 41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http://goodheart.or.kr/

2. 의무이행 여부

⑦ 의무	⑧ 의무이행 여부	⑨ 점검결과
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	이행	적정
나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이행	적정
다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	이행	적정
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이행	적정
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(2012. 2. 2.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)	이행	적정
바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이행	
사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이행	
아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이행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18년 8월 17일

제출인 : 사단법인 굿하트 (단체의 직인) [인]

귀하



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18년 8월 20일

(통보기관의 장) 서울특별시장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⑦ 의무란 바부터 아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분부터 작성합니다.
3.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인적사항

① 법인(단체)명	(사)대한장래인협회	② 사업자등록번호	110-82-16668
③ 대표자성명	이 상 재	④ 기부금단체 지정일	2014,3,31
⑤ 소재지	서울시은평구 연서로178 2층	⑥ 홈페이지 주소	www.fba.or.kr

2.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

⑦ 의무	⑧ 의무 이행 여부	⑨ 점검결과
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고 실제 운영 할 것	○	적정
나.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	○	적정
다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(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규정은 2014.2.20.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)	○	적정
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○	적정
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(2012.2.2.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)	○	적정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제출인 : (사)대한장래인협회

2018년 08 월

(단체의 직인)



귀하

위 단체의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18년 8월 20일

(통보기관의 장)

서울특별시시장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⑥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, ⑨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인적사항

① 법인(단체)명	(사)늘푸른한가족복지회	② 사업자등록번호	117-82-67644
③ 대표자	우광식	④ 기부금단체 지정일	2014년 07월 31일
⑤ 소재지	서울 양천구 오목로 181 3층	⑥ 홈페이지 주소	-

2.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

⑦ 지정 요건 및 의무	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	⑨ 점검결과
가.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	○	적정
나.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	○	적정
다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	○ (정관O) (홈페이지X)	적정
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	○	적정
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(2012.2.2.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)	○	적정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제출인 : (사)늘푸른한가족복지회 [단체의 직인] [인]

서울특별시시장 귀하



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18년 8월 20일

(통보기관의 장) 서울특별시시장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인적사항

① 법인(단체)명	사)여명복지회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206-82-10136
③ 대표자 성명	고순애	④ 기부금단체 지정일	2008.04.11
⑤ 소재지	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60길 49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yeamoung.tnaru.com

2. 의무이행 여부

⑦ 의무	⑧ 의무이행 여부	⑨ 점검결과
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	적정	적정
나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적정	적정
다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	적정	적정
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적정	적정
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(2012. 2. 2.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)	적정	적정
바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	
사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	
아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18년 8월 17일

제출인 : 사)여명복지회 (단체의 직인)  [인]

귀하

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18년 8월 20일

(통보기관의 장) 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⑦ 의무란 바부터 아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부분부터 작성합니다.
3.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인적사항

① 법인(단체)명	e한우리봉사회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352-82-00076
③ 대표자 성명	한 수 미	④ 기부금단체 지정일	2016-02-05
⑤ 소재지	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50길12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www.e한우리봉사회.com

2. 의무이행 여부

⑦ 의무	⑧ 의무이행 여부	⑨ 점검결과
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	○	적정
나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○	적정
다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	○	적정
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○	적정
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(2012. 2. 2.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)	○	적정
바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	
사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	
아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18년

제출인 : 한 수 미

귀하



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18년 8월 20일

(통보기관의 장)

서울특별시장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⑦ 의무란 바부터 아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분부터 작성합니다.
3.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